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 호반써밋Ⅲ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접수처 운영 안내

- 현장접수처 방문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방문 예약자에 한하여 방문이 가능하며 방문 예약은 홈페이지(<http://www.gd3-hoban.co.kr>)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현장접수처 입장 인원 및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방문이 제한될 경우,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일정 변동 시 개별 통보 예정)
- 1. 현장접수처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현장접수처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전당첨자발표 이후 사전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사전공급계약 체결에 한해 현장접수처 입장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 일자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처 방문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2. 현장접수처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방문인원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 호반써밋 분양 상담전화(☎ 1670-5713) 및 홈페이지(<http://www.gd3-hoban.co.kr>)를 통해 본 아파트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담전화 폭주 및 문의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분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격, 세대평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민간 사전청약 관련 유의사항 안내★

- ①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민간에서 사전청약 방식으로 사전당첨자를 선정하는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로 민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추정분양가격, 추정 본 청약 시기 및 입주예정일 등은 향후 본 청약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②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당첨자로 선정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③ 본 아파트는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로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④ 본 아파트는 입주자저축을 사용하여 당첨자 선정하는 주택으로 당첨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며, 향후 사전당첨자 지위포기 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 판명 등 계좌부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된 입주자저축 부활이 가능합니다. (단, 부적격 사전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및 제58조의2에 따라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 ⑤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주체의 적격 여부 확인을 거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4에 따른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별도의 계약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향후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전 시행사(사업주체) 개별안내 등을 통해 본 청약에 대한 최종 계약의사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본 청약 의사를 확정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함께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 후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⑥ 사전당첨자 신청자격과 선정방법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 공급방법을 따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및 제34조에 따른 해당지역 우선공급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더라도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주기간 미충족 시 사전당첨 취소)
- ⑦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당첨이 취소됩니다.
- ⑧ 사전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전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8조의5에 따라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사전당첨자 지위에 있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민간 사전당첨자,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⑨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의 지위는 사전공급계약 체결일 이후 사업주체가 정하는 날부터 최종 계약의사 확인기간(본 청약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일로부터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며, 지위 포기 시 사전당첨자에서 삭제되고 해지된 입주자저축은 부활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체에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지위 포기자 명단을 통지한 후 실제 당첨자 명단 삭제 및 계좌부활까지 약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⑩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의사 확인을 위해 분양가를 포함하여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안 중 확정된 내용(입주예정일, 세대수 등)을 제공하고, 사전당첨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기간 내에 동의/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며(기간 내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경우 거부한 것으로 간주), 그 이후에는 공급계약 의사를 철회/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⑪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향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내 1순위 청약신청 제한 등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각종 청약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⑫ 금회 사전공급계약 이후 미분양·미계약, 사전당첨지위 포기 및 부적격 사전당첨 등으로 인한 잔여물량은 향후 본 청약 공고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은 2022. 02. 2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에 한하여 1순위 자격이 부여되지만,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사전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5에 따라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사전당첨자 지위에 있는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당첨자,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를 포함)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2022.02.28.) 현재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사전청약 거주요건은 아래 문구 참조)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지역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2022.02.28) 현재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0.02.28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일반 공급 세대수의 50% 우선 공급하며,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2년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한 자에게 50%를 공급(인천광역시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2년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표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거주기간 요건은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기간 2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2년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사전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2018.12.1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 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2018.12.11.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 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로서 불이익(일정기간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2순위)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모바일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사전청약 | ○ | ○ |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 ○ | X | X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사전당첨자 선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하며 동·호수 배정은 향후 본 청약 당첨자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자격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관련 안내

금회 공고는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로 사전당첨자만 선정하며, 동·호수배정 및 이에 따른 최하층 우선배정은 향후 본 청약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사전당첨자 모집 시 아래와 같이 최하층 우선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일부개정 2018. 12. 11.)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사전)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사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사전당첨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도 인터넷(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본 청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0항에 따라 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제를 통하여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②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승낙하고 일반공급 추첨제를 통하여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4에 따라 사전공급계약은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제101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사전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에 의거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전청약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및 제34조의제2항에 의거 민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표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거주기간 요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사전당첨자 발표 | 사전당첨자 서류제출 | 사전공급계약 체결 |
|-----|--|--|--|--|--|---------------------------|
| 일 정 | 3월 10일(목) | 3월 11일(금) | 3월 14일(월) | 3월 18일(금) | 3월 20일(일) ~ 3월 27일(일) (3월 25일(금) 제외) | 3월 29일(화) ~ 4월 4일(월) |
| 방 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현장접수처 방문 (10:00~16:00) | 현장접수처 방문 (10:00~16:00)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현장접수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78-1) - 신분증 지참 필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p>당사 현장접수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p>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은행 방침에 따라 은행 청약접수 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 - 8363(2022.02.25.)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3블록
- 사전청약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3~29층 8개동 총 905세대 중 사전청약 공급 815세대
 [특별공급 382세대(일반[기관추천] 55세대, 다자녀가구 81세대, 신혼부부 111세대, 노부모부양 24세대, 생애최초 11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추정 본 청약 시기 : 2025년 04월 예정
- 추정 입주시기 : 2026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사전청약 공급대상(현재 건축심의 준비 단계로 인허가 추진 일정에 따라 본 청약 시기는 변경 될 수 있음) (단위: ㎡, 세대)

| 주택 구분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사전청약 공급 세대수 | 사전청약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사전청약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배정여부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민영 주택 | 2022520003 | 01 | 084.9955A | 84A | 84.9955 | 26.6331 | 111.6286 | 53.8007 | 165.4293 | 49.4515 | 95 | 9 | 9 | 19 | 3 | 19 | 59 | 36 | 배정 |
| | | 02 | 084.9697B | 84B | 84.9697 | 26.2644 | 111.2341 | 53.7844 | 165.0185 | 49.4365 | 263 | 26 | 26 | 52 | 8 | 52 | 164 | 99 | 배정 |
| | | 03 | 084.9692C | 84C | 84.9692 | 26.2075 | 111.1767 | 53.7841 | 164.9608 | 49.4362 | 104 | 10 | 10 | 21 | 3 | 21 | 65 | 39 | 배정 |
| | | 04 | 084.9328D | 84D | 84.9328 | 26.8315 | 111.7643 | 53.7611 | 165.5254 | 49.4150 | 96 | 10 | 10 | 19 | 3 | 19 | 61 | 35 | 배정 |
| | | 05 | 097.9655 | 97 | 97.9655 | 26.9397 | 124.9052 | 62.0106 | 186.9158 | 56.9977 | 128 | - | 13 | - | 3 | - | 16 | 112 | 배정 |
| | | 06 | 097.9655P | 97P | 97.9655 | 26.9397 | 124.9052 | 62.0106 | 186.9158 | 56.9977 | 129 | - | 13 | - | 4 | - | 17 | 112 | 배정 |
| | 합 계 | | | | | | | | | | | 815 | 55 | 81 | 111 | 24 | 111 | 382 | 433 |

※ 상기 면적 및 대지지분은 현 건축심의 준비 단계 설계개요를 따른 것으로 추후 인허가 협의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추정 분양가격

(단위: 세대, 원)

| 약식표기 | 사전청약 공급세대수 | 추정 분양가격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 84A | 95 | 167,579,000 | 292,711,000 | - | 460,290,000 |
| 84B | 263 | 167,528,000 | 291,677,000 | - | 459,205,000 |
| 84C | 104 | 167,527,000 | 291,527,000 | - | 459,054,000 |
| 84D | 96 | 167,456,000 | 293,066,000 | - | 460,522,000 |
| 97 | 128 | 193,152,000 | 297,749,091 | 29,774,909 | 520,676,000 |
| 97P | 129 | 193,152,000 | 297,749,091 | 29,774,909 | 520,676,000 |

※ 상기 추정 분양가격은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타입별 평균 분양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층별/타입별 보정치가 별도 적용될 예정입니다.(추정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가전, 가구 등) 금액 미포함)

■ 주택형별 평면도

| 구분 | 84A | 84B | 84C |
|-----|-----|-----|-----|
| 기본형 | | | |
| 확장형 | | | |

| 구분 | 84D | 97 | 97P |
|-----|---|--|---|
| 기본형 |  |  |  |
| 확장형 |  |  |  |

※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추가선택품목은 추후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 확정되며 상기 추정 분양가격 및 평면도는 확장형이 아닌 기본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평면도는 사전청약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며, 기본형 평면과 확장형 평면을 게재한 것임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평면도의 구성, 옵션 등 사항은 설계진행 및 인허가 과정에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 | | 84A | 84B | 84C | 84D | 97 | 97P | 합계 |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인천시 | 1 | 3 | 1 | 1 | - | - | 6 |
| | | 서울시 | 1 | 3 | 2 | 1 | - | - | 7 |
| | | 경기도 | 1 | 3 | 1 | 1 | - | - | 6 |
| | 국가 보훈처 | 국가유공자 | 1 | 3 | 1 | 1 | - | - | 6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3 | 2 | 1 | - | - | 7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1 | 3 | 1 | 2 | - | - | 7 |
| | 중소기업 근로자 | | 1 | 3 | 1 | 2 | - | - | 7 |
| | 북한이탈주민 | | 1 | 3 | 1 | 1 | - | - | 6 |
| | 우수선수 | | 1 | 2 | - | - | - | - | 3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인천광역시(2년 이상) 계속 거주자(50%) | 5 | 13 | 5 | 5 | 7 | 7 | 42 | |
| | 인천광역시(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50%) | 4 | 13 | 5 | 5 | 6 | 6 | 39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19 | 52 | 21 | 19 | - | - | 111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3 | 8 | 3 | 3 | 3 | 4 | 24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19 | 52 | 21 | 19 | - | - | 111 | |
| 합 계 | | 59 | 164 | 65 | 61 | 16 | 17 | 382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전 세대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형으로 공급하여 단독세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무주택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주택소유 자격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전청약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선정제한(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청약자격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6 1284 2128 1505"> <thead> <tr> <th data-bbox="286 1284 748 1361">구 분</th> <th data-bbox="748 1284 1209 1361">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th> <th data-bbox="1209 1284 1671 1361">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th> <th data-bbox="1671 1284 2128 1361">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6 1361 748 1398">전용면적 85㎡ 이하</td> <td data-bbox="748 1361 1209 1398">250만원</td> <td data-bbox="1209 1361 1671 1398">300만원</td> <td data-bbox="1671 1361 2128 1398">2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6 1398 748 1434">전용면적 102㎡ 이하</td> <td data-bbox="748 1398 1209 1434">400만원</td> <td data-bbox="1209 1398 1671 1434">600만원</td> <td data-bbox="1671 1398 2128 1434">3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6 1434 748 1471">전용면적 135㎡ 이하</td> <td data-bbox="748 1434 1209 1471">700만원</td> <td data-bbox="1209 1434 1671 1471">1,000만원</td> <td data-bbox="1671 1434 2128 1471">4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6 1471 748 1505">모든면적</td> <td data-bbox="748 1471 1209 1505">1,000만원</td> <td data-bbox="1209 1471 1671 1505">1,500만원</td> <td data-bbox="1671 1471 2128 1505">500만원</td> </tr> </tbody> </table> | 구 분 |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 | 전용면적 85㎡ 이하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 구 분 |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 기준

-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주택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 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인천광역시(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초과 및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2022.02.28)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 50% |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0.02.28.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기간 충족 예정인 자 |
| | ③ 기타지역(수도권) | 50% |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2년 미만 거주자 포함),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분 |

*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예정인 자 포함)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수도권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수도권 거주 예정인 자 포함)와 다시 경쟁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관련 공통사항

- *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입니다.
- *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인천광역시(2년 미만 거주자 포함) 및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지역 우선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자 선정 불가)을 받게 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 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공급세대수가 1세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세대를 배정합니다.
- * 생애최초·노부모·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상기 지역우선 공급 기준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2022.02.28)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 50% |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0.02.28.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기간 충족 예정인 자 |
| | ② 기타지역(수도권) | 50% |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2년 미만 거주자 포함),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분 |

*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예정인 자 포함), 기타지역(수도권,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각각 50% 공급합니다. 단, 해당지역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경기도·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관련 공통사항

- *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입니다.
- *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단,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 미적용.
-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지역 우선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을 받게 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추천기관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우수선수 : 대한체육회

▪ 사전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사전당첨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사전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주택형태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 충족이 가능한 자 우선)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2년 미만 거주자 포함) 및 수도권(우선 공급 낙첨자 포함 및 서울특별시, 경기도)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사전당첨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 |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 | 한부모 가족 | 5 |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1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사전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사전당첨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2년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 충족이 가능한 자에게 50%, 인천광역시(2년 미만 거주자 포함)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요건 충족이 가능한 자에게 50% 순으로 우선 공급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 공급유형 |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8,687,331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초과~120% 이하 | 6,208,935원~ 7,450,721원 | 7,200,810원~ 8,640,971원 | 7,326,073원~ 8,791,286원 | 7,779,826원~ 9,335,790원 | 8,233,579원~ 9,880,294원 | 8,687,332원~ 10,424,797원 |
| |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208,935원~ 8,692,508원 | 7,200,810원~ 10,081,133원 | 7,326,073원~ 10,256,501원 | 7,779,826원~ 10,891,755원 | 8,233,579원~ 11,527,009원 | 8,687,332원~ 12,162,263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450,722원~ 9,934,294원 | 8,640,972원~ 11,521,294원 | 8,791,287원~ 11,721,715원 | 9,335,791원~ 12,447,720원 | 9,880,295원~ 13,173,725원 | 10,424,798원~ 13,899,730원 |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8,692,509원~ | 10,081,134원~ | 10,256,502원~ | 10,891,756원~ | 11,527,010원~ | 12,162,264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

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희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희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추첨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전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 충족이 가능한 자에게 50%, 인천광역시(2년 미만 거주자 포함)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요건 충족이 가능한 자에게 50%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사전당첨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1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본 아파트는 전 세대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형으로 공급하여 단독세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함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 공급유형 |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기준소득, 50%) | 130% 이하 | ~8,071,614원 | ~9,361,052원 | ~9,523,894원 | ~10,113,773원 | ~10,703,651원 | ~11,293,530원 | |
|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130% 초과~160% 이하 | 8,071,615원 ~9,934,294원 | 9,361,053원 ~11,521,294원 | 9,523,895원 ~11,721,715원 | 10,113,774원 ~12,447,720원 | 10,703,652원 ~13,173,725원 | 11,293,531원 ~13,899,730원 | |
| 추첨제 (30%) | 1인 가구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 | 160%이하 | ~9,934,294원 | ~11,521,294원 | ~11,721,715원 | ~12,447,720원 | ~13,173,725원 | ~13,899,730원 | |
| |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생애최초 자산보유기준: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표 「참고」**

▪ **사전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 충족이 가능한 자에게 50%, 인천광역시(2년 미만 거주자 포함)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요건 충족이 가능한 자에게 50% 순으로 우선 공급하며, 동일 지역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사전당첨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 사전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 사전당첨자 등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주택 | [해당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 1순위 | 전용 85㎡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정제 100% 적용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정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 | 전용 85㎡ 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정제 (50%), 추첨제(50%) 적용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2순위 | 전 주택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모함)에 가입한 자 |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 구분 |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 |
|--------------|---------------------|------------------------|----------------------------|
| 전용면적 85㎡ 이하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 청약 가정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 | | | |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입주자거주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

※ 제28조제6항에 따라 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정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정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정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양가족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 | |
|----------------------|---|
| | - (30세 이상)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IV 사전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2.03.10.(목)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현장접수처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사업주체 현장접수처(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증 지참 필수 |
| 일반공급 | 1순위 | 2022.03.11.(금)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2순위 | 2022.03.14.(월) 09:00~17:30 |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도 인터넷(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사업주체 지정 장소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민간 사전 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민간 사전 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민간 사전 청약신청」 ⇒ 「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 분 | 구비사항 | | | |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사전당첨자 선정 방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p>특별공급 사전당첨자 선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p>일반공급 사전당첨자 선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초과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주택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2022.02.28) 현재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2020.02.28 이전부터 계속거주) 계속 거주자에게 일반 공급 세대수의 50% 우선 공급하며, 인천광역시(2년 미만 거주자 포함)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인천광역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2년 미만 거주자 포함)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인천광역시 2년이상 계속 거주자 중 낙첨자는 인천광역시(2년 미만 거주자 포함)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p>유의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지정 장소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지정 장소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사업주체 지정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제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등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공시행 사전청약은 가능)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사전공급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사전당첨 및 사전공급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

VI 사전당첨자 발표 및 자격확인 서류 제출

■ 일정 및 계약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사전당첨자 발표 | 사전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검수 (사전공급계약 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2.03.18.(금)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바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2.03.20.(일) ~ 2022.03.27.(일) (2022.03.25.(금) 제외, 현장접수처 임시 폐관) (7일간, 10:00 ~ 16:00) • 장소: 당사 현장접수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 -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지참 - 1, 2순위 당첨자 : 일반공급 구비서류 지참 ※ 서류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일반공급 | 1순위 2순위 | | |

- ※ 사전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방문접수(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사전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사전당첨내역 조치가 불가(사전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사전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사전당첨자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사전당첨자의 사전공급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사전당첨자)에 한하여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 사전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사전당첨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사전공급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사업주체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사전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사전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준 은행 청약자) | |
|-----------|---|--|
| 이용기간 | 2022.03.18.(금) ~ 2022.03.27.(일) (10일간) | |
| 인터넷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민간사전청약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민간사전청약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사전당첨자 |
| | 제공일시 | 2022.03.18.(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전당첨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서류 | | ○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 |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 | | ○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 | |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 등본상 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존·비속 세대원 | 주민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해외에 체류 중(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30세 미만 : 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이상 : 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단독세대일 경우 |
| | | ○ |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본인 | 10년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본 주택의 해당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에 충족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당첨 시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 본인 | 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합니다. |
| 다자녀 특별공급 | ○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본인 | [현장접수처 비치]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 본인(또는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 | | | | |
|--------------|---|------------------------|------------------|---|
| | | 출생증명서 | 배우자) | |
| | ○ |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 임신의 경우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 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직계비속 | 본인 : 만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직계비속 : 만 18세이상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 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 보험증 제출 가능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표 소득증빙서류] 참조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 | ○ |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 토 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단독주택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택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 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 보험증 제출 가능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19세 이상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표 소득증빙서류] 참조 |

| | | | | |
|---------------------------|---|-------------|------------------------|--|
| | | | 세대원 | |
|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 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 참조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 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증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 토 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단독주택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텍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가정 산정 기준표 | 본인 | [현장접수처에 비치]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기간이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자녀 | 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일반공급 당첨자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자녀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 | ○ | 인감도장 | 청약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 |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 |
| | ○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②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해당직장 • 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 전직자 |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해당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 국민연금 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 등기소 |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 세무서 •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
| 무직자 |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현장접수처 비치) ※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 • 현장접수처 • 세무서 또는 • 홈택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증빙서류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 기타 본 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
|--|
| <p>■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p>■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p> <p>■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지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
|--|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Ⅶ 사전공급계약 체결

■ 사전공급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사전공급계약 체결 기간 | 장 소 | 문의전화 | 비고 |
|--|-----------------------------------|-----------|---------------------|
| 2022.03.29.(화) ~ 04.04.(월) (7일간, 10:00~16:00) | 당사 현장접수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 | 1670-5713 | 일정 및 시간의 변동 시 별도 공지 |

■ 사전공급계약시 구비서류

| 구 분 | 서류유형 | | 해당 서류 | 발급 기준 | 구 비 서 류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특별/일반공급) | ○ | | 자격검증서류 |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
| | ○ |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사전 서류 제출 시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 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 | 무허가건물확인서 | 해당 주택 |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 |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등 |
|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
|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 -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 | | | |
|------------------------|---|-------------|-----|--|
| | | 인정하는 서류 | | |
| 제3차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 | ○ | 위임장 | 청약자 |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인 공금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해외 체류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전공급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사전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부적격 사전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사전공급계약 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전당첨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함(단,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수도권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을 제한함(공공시행 사전청약은 신청 가능))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사전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기타 사전공급계약 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4에 준함

■ 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사전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사전당첨자 선정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고, 제5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본 단지는 건축심의 준비 단계로 향후 심의결과 및 사업계획승인 진행 사항에 따라 세부 설계사항 / 단지 내부여건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해당 모집공고상의 유의사항은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 추가, 삭제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및 지구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지구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설계변경,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에 당첨된 단지의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 본청약 이후 「주택법」 제48조의2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표기 오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안내문,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 청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 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공급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본 단지는 공정을 60%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이 가능한 후보양 현장으로, 본 계약과 준공까지의 기간이 타 후보양 단지 대비 짧아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가 일찍 도래하므로, 자금조달계획 등 마련 후 사전청약 하시기 바람

■ 사업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본 단지는 건축심의 준비 단계로 향후 심의결과 및 인허가 진행 사항에 따라 세부 설계내용 및 단지 내외부 여건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은 건축심의 준비 단계로 향후 심의결과 및 사업계획승인 진행 사항에 따라 세부 설계사항/ 단지 내부여건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단계별(현재 1,2,3단계)로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조정 및 부지조성공사 착공(준공)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지자체 및 국가기관으로서 향후 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이 지연 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주차장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학교용지 등의 개설과 인접대지, 보행자도로, 연결녹지 등의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기타 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전면조망, 생활권 등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시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동측, 북동측 : 26M / 서측 : 6M(보행자도로) / 남서측 : 15M / 북측 : 40M / 북서측 : 46M)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진동·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시 혼잡 할 수 있으니 사전공급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840형 세대는 다목적실 벽체가 승강로에 면하여 승강기 운행중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필로티 상부층 세대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

여 확인하시기 바람.

- 인근 상업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인해 일부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기타용지(근린생활용지, 주차장용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사전당첨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단지 주변에는 인접대지, 보행자도로, 연결녹지 등의 계획에 따라 전면조망 및 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인접대지, 학교, 도로, 완충녹지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기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관련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에 실외기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수거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쓰레기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악취 등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 주동 출입구 부근, 부대시설, 단지 조경공간 등에 제연설비, 헬륨 등을 위한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부 세대의 경우 이로 인한 소음, 진동등 영향을 입을 수 있음
- 인천검단지구 내 모든 교육시설의 설립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학생 수용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본 청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정 본 청약 시기: 2025년 04월 예정 / 추정 입주예정 시기 : 2026년 05월 예정

※ 현재 건축심의 준비 단계로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공정에 따라 본 청약 및 입주예정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시기는 추후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 구분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주체(시행사) | 티에스리빙주 | 200111-0336903 |
| 시공사 | (주)호반산업 | 200111-0308994 |

■ 현장접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

■ 사전청약 안내 홈페이지 : <http://www.gd3-hoban.co.kr>

■ 분양문의 : ☎ 1670-5713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